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9

대 전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102633 취득세감면신청반려통지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7. 3. 2.
판 결 선 고	2017. 4.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4,124,270원, 지방교육세 9,412,410원, 농특세 4,706,2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9

가. 원고는 [redacted]시 [redacted]구에 사업장을 두고 호텔경영업,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B은 [redacted]시 [redacted]구에 사업장을 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4. 9. 16.경 원고를 설립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9. 18. C로부터 [redacted]시 D 대 100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2014. 10.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4.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4. 원고에게 '원고는 C로부터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 사업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취득세 감면신청 반려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 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94,124,270원, 지방교육세 9,412,410원, 농어촌특별세 4,706,200원(각 세목별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주장

C의 운영자인 B은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호텔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C의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원고를 설립한 것이고,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C이 실제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C로부터 사업을 양수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9

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취득세 등 감면대상으로 정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주장

피고가 취득세 감면통지를 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호증, 을 제1, 2, 4,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C은 2011. 7. 20.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같은 해 8. 1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② C은 2014. 4. 29. [redacted]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8층, 객실 52실 규모의 F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2014. 5. 1.부터 2014. 12. 31.까지 건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광호텔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을 받았고, 다음날 건축허가를 받았다.

③ C은 이 사건 호텔을 신축하기 위한 설계, 감정평가, 지반조사 등을 진행하던 중, 건축자금 조달에 필요한 대출을 받기 곤란한 상황에 처하였다. 이에 C의 운영자 B은 2014. 9. 16.경 C 대신 이 사건 호텔을 신축하여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한 회사로서 원고를 설립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9

④ 원고는 2014. 9. 28.경 [redacted]시장에 'C은 이 사건 호텔을 신축하는 과정에 소요된 금융비용으로 인해 자본이 잠식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의 주체를 새로운 신설 법인인 원고로 변경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30. 위 신청을 취하하면서 'C의 이 사건 사업을 원고가 양수한다'는 내용의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사업계획과 동일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4. 10. 1. 원고의 위 신고를 수리하고, 원고의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호텔을 신축한 후 2016. 6. 13.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는 제1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여 창업중소기업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6조 이하에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법 제120조 제3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같은 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두7412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614 판결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9

(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서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참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에 관한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의 취지 역시 이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원고는 [redacted]시장에 C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한다는 신고를 하면서, C의 이 사건 사업계획과 동일한 내용의 관광호텔업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므로, 관광진흥법 제8조 제1항, 제5항에 따라 C이 관광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로서 가지는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2) 이에 대해 원고는 '당초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였다가 피고의 요구에 의해 사업양수신고를 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양수신고를 중요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광진흥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각 호에 의하면, 사업주체의 변경은 사업양수신고의 대상일 뿐, 사업계획 변경승인의 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아닌 사업양수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어떠한 잘못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9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C이 추진하던 이 사건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아 진행하기 위하여 C의 실질적 운영자인 B에 의해 설립되었고, 실제로도 C의 이 사건 사업계획대로 이 사건 호텔을 신축하였는바, 원고의 사업양수신고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C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까지 실질적으로 관광호텔업을 경영하지 않았으므로(아직 이 사건 호텔이 신축되기 전이어서 C이 관광호텔업자로서 영리활동을 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사업을 양수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의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서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이고, 어떠한 사업이 양도인에 의하여 추진되다가 중단되고 해당 사업을 양수한 자가 종전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다시 진행한 경우, 설령 양도인의 본격적인 영리활동이 개시되기 전에 사업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이 양도인에 의해 추진되던 사업과 무관하게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여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조항이 규정하는 '사업의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양도인의 영리활동 개시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는 없는 점, ㉯ 관광진흥법령상 관광호텔업이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의미하므로, 관광호텔업 경영활동의 범주에는 사업자가 관광객에게 숙박시설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관광호텔의 신축 등 숙박시설 등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 이 사건에서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전까지 이 사건 호텔의 신축을 위하여 이 사건 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9

업계획 승인, 설계, 감정평가, 지반조사 및 대출 등을 추진하였음을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는 C의 관광호텔업 경영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는 'C의 운영자인 B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고를 설립한 이상, C과 원고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체이므로, 원고를 창업중소기업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C과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가 동일인이라는 이유로, 서로 엄연히 구별되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위 두 회사를 단일한 권리·의무의 주체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C과 별개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두762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0. 20.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에 관하여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 피고가 2016. 7. 29. 위와 같은 내용의 취득세 비과세(감면) 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이 각 인정되나, 이와 같이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이 법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9

해석 등을 그르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 감면에 대하여 잘못 안내하였다거나, 원고의 감면신청을 잘못 수리하고 감면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두1255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피고가 취득세 감면 통지를 한 2014. 10. 20. 이전인 2014. 9. 18.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 2014. 9. 28.경 천안시장에 '이 사건 사업의 주체를 원고로 변경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원고가 위 감면 통지를 신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심준보

판사 손호영

판사 박지숙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9

별지

관계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9

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① 관광사업을 양수(讓受)한 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등 또는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의무(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③ 관광사업자가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그 처분 또는 명령의 효과는 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새로운 관광사업자에게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승계한 관광사업자가 양수나 합병 당시 그 처분·명령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9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2. 호텔업의 종류

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제9조(사업계획 변경승인)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지 및 대지 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2. 건축 연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연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3. 객실 수 또는 객실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휴양 콘도미니엄업만 해당한다)
4. 변경하려는 업종의 등록기준에 맞는 경우로서,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간의 업종변경 또는 호텔업 종류 간의 업종 변경

<끝>